



#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 결 정 문

---

사건번호: KR-0700017  
신청인: 1. 세이코 엡손 가부시킴가이샤  
2. 한국엡손 주식회사  
피신청인 : 박성준

---

###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1. 세이코 엡손 가부시킴가이샤 (Seiko Epson Corporation),  
일본국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2초메 4-1  
2. 한국엡손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워 27층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118 해운센터 본관 19층

피신청인: 박성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8-25 BCHI빌딩

분쟁도메인이름은 “epson-ink.net”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식회사 후이즈(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40-3 서북빌딩 2층)에 등록되어 있다.

##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의 2007년 3월 27일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 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07년 3월 28일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7년 3월 28일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07년 3월 28일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 (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07년 3월 29일 센터는 “신청서 전송 표지” 를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등기우편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을 2007년 4월 25일임을 통지하였다.

2007년 4월 27일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답변서미제출통지를 하였다.

2007년 5월 2일 센터는 이 사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1인 조정부로서 장문철 조정위원을 선임을 요청하였고 2007년 5월 3일 조정위원은 조정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07년 5월 3일 조정부 구성예정통지를 하였고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적법하게 조정부를 2007년 5월 9일 구성하였다.

## 3. 사실관계

신청인 1은 1942년 5월 설립된 회사로서 프린터,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프로젝트 등을 생산 판매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생산 및 판매망을 구축하여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다국적 기업체이다. 신청인은 일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 등에 <EPSON> 관련 상표 및 서비스표를 등록하였다.

또한 신청인 2 한국엡손주식회사는 1996년 10월 설립되어 대한민국에서 신청인 1의 제품을 판매, 마케팅 및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청인 1의 자회사이며 대한민국내에서 엡손 관련 상호,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았으며 대한민국 내에서 해당 상표 및 서비스표의 주지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광고활동을 해왔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epson-ink.net을 등록한 후 이를 잉크토너닷컴이라는 제목의 웹사이트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웹사이트는 유명 브랜드의 프린트용 잉크 및 토너의 정품 또는 호환 재생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 4. 당사자들의 주장

###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분쟁 도메인이름 <epson-ink.net>의 주요부분은 신청인의 상표인 EPSON이며 INK는 기술적이고 식별력이 없고 부가적 의미만 가진다.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 및 서비스표와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하다. 또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로 하여금 엡손관련 제품을 적법하게 판매하거나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사업상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혼동을 준다.

(2) 피신청인은 EPSON에 관한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신청인으로부터 해당 표지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 받지도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3) 피신청인은 EPSON 표장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엡손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을 자신의 웹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한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신청인의 경쟁사의 정품 및 재생 잉크와 토너카트리지를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회사와 관련하여 엡손 잉크 정품이 아닌 호환잉크만을 판매하고 있다. 한편,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epson-ink.net` 이외에 `inktoner.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있는데 두 도메인이름을 입력하면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잉크토너닷컴이라는 동일한 웹사이트로 접속된다. 이는 피신청인이 `inktoner.com`이라는 별도의 도메인이름으로 해당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무관한 `epson-ink.net` 를 사용하여 동일한 웹사이트에 연결시켜 일반소비자를 혼동하게 하여 신청인의 경쟁사 제품 또는 호환잉크를 판매하기 위해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이다.

##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시하지 않았다.

##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 A. 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분쟁 도메인이름 <epson-ink.net>은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한 명칭인 EPSON과 INK라는 명칭이 결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INK는 일반 명사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가어에 불과하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의 주요부분은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한 EPSON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정부의 규정 제4조 (a)(i)에 따라 요구하는 바와 같이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 및 서비스표인 EPSON이라는 표지를 피신청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피신청인은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신청인은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지도 않으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epson-ink.net>을 잉크토너닷컴이라는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 피신청인 스스로 분쟁도메인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a)(ii)에 따라 요구하는 바와 같이 등록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실을 신청인측에서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우선, 피신청인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유명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록하고 사용한 사실로부터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추론하게 한다.

본 패널은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한다. 첫째,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잉크토너닷컴이란 제목의 웹사이트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웹사이트는 주로 신청인의 경쟁사의 프린터용 토너 및 잉크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엡슨 잉크와 관련해서는 정품이 아닌 호환잉크만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이용자로 하여금 엡슨관련 제품만을 적법하게 판매하거나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사업상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점이 추론된다. 둘째, 피신청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도메인이름 `inktoner.com`을 사용하여 잉크토너닷컴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와는 무관한 분쟁도메인이름 `epson-ink.net`를 등록하여 동일한 웹사이트에 연결시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 측의 유명 상표의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점을 추론하게 한다.

본 패널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신청인이 규정 제4조 (a)(iii)에 따라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 6. 결정

위에서 검토한 바에 따라, 본 조정부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본건 분쟁 도메인이름인 <epson-ink.net>을 신청인 1인 세이코 엡손 가부시키키가이샤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

장 문 철  
1인 조정부

결정일: 2007년 5월 25일